

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곽영학

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연철흙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19년 7월 1일

○ 회부일자 : 2019년 7월 3일

3. 개정이유

○ 장애인복지법에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장애등급 인용 조항 개정(안 제5조제1항)

– 장애등급 → 장애정도

5. 검토의견

○ 금번 개정조례안은 「장애인복지법」이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장애등급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－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정하는 것임.

○ 금번 개정조례안은 「장애인복지법」 개정에 따라 장애인등급제개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